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04호 2021. 5. 31.(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436호)
-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37호)
-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예천군 조례 제2438호)

고 시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1-38호)

공 고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756호)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757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6호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고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제·개정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정책개발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 용역을 위탁받은 자의 여론 수렴, 조사 및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 시에는 연장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원연구단체의 직무수행)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활동비 사용 및 정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3. 제5조의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4. 의원연구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5.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관리
6. 「예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관련사항 준수 등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등록취소) 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5.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1조(의원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범위는 예산편성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은 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서식에 의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방식으로 집행하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연구용역의 수행자가 될 수 없다.

⑥ 의원연구단체가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결과 통지서를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 지원을 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

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1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원연구단체 해산)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목적				
주요관심분야				
회원명단	직 책	성 명	서 명	비고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단 체 명			
연구활동	주 제		
	목 적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주요내용	○ ○ ○		
연구단체 지원신청	금 액	금 원(₩ 원)	
	산출내역		
기 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단체명			
	대표자			
	회원명단			
	기 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 통지서

단 체 명				
대 표 자			회원수	
연구목적				
심의결과	심 의 내 용			
	연 구 활동비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년도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등 록 증

1. 단 체 명 :

2. 설 립 목 적 :

3. 구 성 원 : 대표자 의원, 회원 의원, 회원 의원

위 단체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활동비종류			
지원신청액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금회 신청액(C)			
지원 잔액 (D=A-B-C)			
수 령 인	성 명		
	지급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붙 임 : 세부계획서, 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용 역 기 관)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주제		
	연구내용		
	연구 활동 비		
	기 타		

※ 참고자료 첨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 결과 통지서

연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활동 계획변경	연구주제				
	과 제 명				
	계획변경 적합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활동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기타사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예천군의회 의장 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단 체 명			
연구주제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연 구 활동비 정 산	결정액	금 원(₩ 원)	
	집행액	금 액	
		주요내역	
	잔 액	금 원(₩ 원)	
특기사항			

- 붙임 1.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부
 3. 기타 참고자료 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원연구단체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등록 번호	단 체 명	회원수	대표자	회원명	등록일	취소일

◇제정이유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주요 용어를 정의함(제2조)

○ 의원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등 용어에 대한 정의

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제3조 및 제7조)

○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예천군의회 의원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

○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심의위원회 구성(제4조)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둠

라. 의원연구단체 지원(제11조)

○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 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7호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함

나. 예우 및 홍보(제5조)

- 군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38호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자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병 명		상병코드	
	지급계좌번호		은행/예금주	
	의료보장	☐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자 ☐ 기타		
신청인	성 명		관 계	
	전화번호			
신청내용	총구입비	본인부담금		신청금액

위와 같이 암환자 가발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예천군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 서식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2의1
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별지 2의2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가무원/보호자용) : 별지 7 및 7의1
4. 의사 소견서 및 가발구입비 영수증

◇제정이유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세워주고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함
-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대상으로 명시

나. 가발구입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제4조 및 제5조)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항암치료 중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제출자
-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 횟수는 1회에 한함

다.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

- 지원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 또는 완화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5. 31.

예 천 군 수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 및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①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다.

사 업 명	구 간 현 황		
	도로명주소	상 가 명	
		기 점	종 점
2015년 맛고을거리 간판개선사업	맛고을길 19 ↔ 맛고을길 58	최씨네찜닭, 남일철공소	네네치킨, 레몬트리
	시장로 46-1 ↔ 시장로 99-1	황금분식	대영사

2018년 도시미관개선 간판개선사업	시장로 85 ↔ 시장로 102	아식스 국수나무	정통한우 김밥천국
	중앙로 66 ↔ 중앙로 84 (충효로 284)	모범운전자회 귀뚜라미황금설비	동맹이왕족발 백수식당
2019년 맛고을주변거리 간판개선사업	효자로 70 ↔ 시장로 71	카페행복향기 황금포장마차	백한의원 예천동물약품
	효자로 78 ↔ 시장로 79-1	중앙꽃집 예향꽃집	경북이벤트인테리어 용희양행
	효자로 86 ↔ 시장로 85	김승일치과의원 황영길법무사사무소	다있소축산물유통센터 하트
	중앙로 19 ↔ 중앙로 42	불라면 디에이치건설	화성노래방 영광열쇠
2020년 원도심거리 간판개선사업	시장로 71-2 ↔ 시장로 84-1	파크랜드 선화공인중개사	대경수산 한일유리
	시장로 107 ↔ 시장로 117	만나식품 푸른약국	황금청과 예천한우축산물도매센터
2020년 효자로 간판개선사업	효자로 77 ↔ 효자로 124	마야웃수선 궁전노래방	동창세탁소 영남미용실
2021년 효자로 간판개선사업	효자로 1 ↔ 효자로 76	동아미용실 경도가스설비공사	NH농협은행 예천소백복지재단

② 적용범위는 해당구간에 위치한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첨부된 【별표1】 위치도를 참조한다.

제4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할 수 있다.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2.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②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 창문이용광고물, 의료기관·약국 표시 상징물, 미용업소 싸인볼은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광고물이 업소를 특정 짓고 차별화할 수 있도록 로고, 엠블렘, 픽토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①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가.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 ② 벽면이용 간판은 입체형을 권장한다. 다만, 벽면에 미관을 고려해 배경판을 설치할 경우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간판의 교체 및 외벽 훼손 방지를 위한 게시틀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하고 10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의 80%범위내로 하며 1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가. 1층은 55cm 이내로 표시한다.

나. 1층 증가 시 5cm 크게 할 수 있으며 최대 70cm이하로 한다.

다만,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표시하는 입체형간판의 세로 크기는 벽면 폭 이내로 표시 할 수 있다.

- ④ 간판의 돌출 폭은 30cm이내여야 한다.
- ⑤ 커튼월(비내력 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구조물 등에 게시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 표시 상징물 (약, + 등), 미용업소 싸인볼에

한하여 허용하며, 각 업소가 위치한 벽면에 각자 표시할 수 있다.

②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띠 형식, 픽토그램, 글자를 이용해 간결하게 표시하며 건물과 조화되고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③ 햇빛을 차단할 목적의 시트지는 무채색을 사용한다.

제8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점멸 방식의 네온사인, 전광류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것)형식의 광고물 표시할 수 없다.

③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안하여야 하며,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④ 조명의 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9조(적용의 특례) ① 군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자가 이 고시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디자인된 광고물 등은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지정구역에 간판을 신규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 ③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지정구역 위치도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21조)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나. 지원내용 및 적용범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5조)

- 지원내용 : 사업장 시설 증축·개축·수선, 상표 개발, 포장재 제작, 장비·비품 교체 비용 등
- 적용범위 :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6조)

-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조사 실시

라.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 추진을 위한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현지답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
- 평가단의 평가결과 반영하여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마. 지원 중지 및 환수 내용 일부 수정(안 제17조의2, 제18조)

- 재해·재난에 대한 피해 및 으뜸가게 선정에 따른 지원은 지원 제한 산정 시 제외

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및 사업 지원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peachks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및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정의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21조)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나. 지원내용 및 적용범위 명확히 규정(안 제3조, 제5조)

○ 지원내용 : 사업장 시설 증축·개축·수선, 상표 개발, 포장재 제작, 장비·비품 교체 비용 등

○ 적용범위 :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6조)

○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 조사 실시

라.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 추진을 위한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은 현지답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및 개선사항 발굴

- 평가단의 평가결과 반영하여 예천군 으뜸가게 선정
- 마. 지원 중지 및 환수 내용 일부 수정(안 제17조의2, 제18조)
 - 재해·재난에 대한 피해 및 으뜸가게 선정에 따른 지원은 지원 제한 산정 시 제외
- 바.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 소상공인 관련 단체 활동 및 사업 지원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3조, 제35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5조의2
- 「소득세법」 제168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21년 1회 추경(10백만원) 및 22년 본예산(50백만원) 편성

라.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5월 중 입법예고 실시

바. 비용추계서 : 붙임과 같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장 시설 증축·개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
2. 사업장 상표 개발 및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
3.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
4.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및 긴급생계비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를 제4조로 하고, 제6조, 제12조의2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 지원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의2(으뜸가게 발굴·육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천군 으뜸가게를 발굴·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군 으뜸가게 발굴·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 구성 시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및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천군 으뜸가게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평가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단이 수행할 평가방법 및 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의2(지원 제한) ①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업체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은 제1항의 지원 제한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군수는 다음”으로, “지원 중지 및”

을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원신청한”을 “지원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폐업”을 “사업장을 폐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업종의 경우”를 “경우”로 한다.

3. 지원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3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소상공인 기본법</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란 「 <u>소상공인 기본법</u>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u>사업장 시설 증·개축비, 수선비 : 화장실, 주방, 간판, 시설 인테리어</u>		1. <u>사업장 시설 증축·개축 및 수선에 필요한 비용</u>		
2. <u>사업장 브랜드 개발비 및 포</u>		2. <u>사업장 상표 개발 및 포장재 제작에 필요한 비용</u>		

장재 제작비

3.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비

4.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및 긴급생계비 등 경영안정 자금 지원. 이 경우 제18조 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의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범위)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 소상공인의 사업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3. 사업장 장비 및 비품 교체에 필요한 비용

4.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카드수수료 및 긴급생계비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

제6조 (생 략)
<신 설>

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 지원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12조의2(으뜸가게 발굴·육성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하여 예천군 으뜸가게를
발굴·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천군 으뜸가게 발
굴·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
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평가단원 구성 시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및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사항
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천군 으뜸가게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단의 평가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평가단의 활동에 따
른 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평가단의 구성·운영, 평가
단이 수행할 평가방법 및 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 설>

제18조(지원 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2. (생략)
3. 지원자금 및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생략)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6. 이 조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 동일 업체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분야

제17조의2(지원 제한) ①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업체가 1회 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분야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지원은 제1항의 지원 제한을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18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

-----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
-----.

1. ----- 지원받은 -----
2. (현행과 같음)
3. 지원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5. -----
----- 사업장을 폐업-----

<삭 제>

<u>에서 총액 2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경우</u> 7.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u>업종의 경우</u> 8. (생략) <u><신설></u>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및 「<u>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u>」, 「<u>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및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을 각 준용한다.	7. ----- ----- <u>경우</u> 8.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u> 제21조(준용) ----- ----- 「<u>소상공인기본법</u>」 ----- ----- ----- ----- -----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지원기관의 설치)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 소재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번호를 매길 수 있다.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⑪ (생략)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예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을 고려하여 특례보증 지원제외업종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외업종 일부 개정(안 별표)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류 도·소매업, 여관업, 지주회사, 부동산 컨설팅서비스 업종을 삭제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새마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peachksg@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전화: 054-650-68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자 치 법 규 명 :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 규정을 고려하여 특례보증 지원제외업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외업종 일부 개정(안 별표)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류 도·소매업, 여관업, 지주회사, 부동산 컨설팅서비스 업종을 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
- 마. 입법예고 : 5월 중 입법예고 실시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제외업종(제7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